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68
----------	-------

발의연월일 : 2026. 1. 20.

발 의 자 : 황정아 · 최민희 · 이주희
윤건영 · 주철현 · 허성무
장종태 · 박용갑 · 김우영
송재봉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됨.

이에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연구개발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3

항 신설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을 “범위,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② (생략) <u><신 설></u></p> <p>③ <u>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7조의2(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④ -----<u>범위, 제2항에 따른 정보 수집의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u> ----- -----.</p>